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
----------	-----

제출일자 : 2005. 7. 5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2005.1.30일자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 나. 2005.7.31일자 사회복지위원회 폐지에 따른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자 결정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 심의기능을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
- 다. 종사자의 복무 규정(연가 및 특별휴가)을 현실화 시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준하도록 변경
- 라. 영유아 보육사무가 2004.6.12일자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2005.6.23일자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른 보육업무 관장부서 변경

2. 주요골자

- 가. 「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른 법 조항, 조문 및 용어 변경
 - 공립보육시설의 개념 : 영유아보육법 제7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안 제1조)
 - 보육시설 입소순위 변경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근거한 영유아 (안 제4조)
 - 보육료 등의 수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안 제5조)
- 나. 사회복지위원회 폐지 (안 제6조, 제10조, 제14조)
 -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자 결정 및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 심의기능 사회복지위원회 → 보육정책위원회
- 다. 종사자의 복무 규정(연가 및 특별휴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준용 (안 제13조)
- 라. 보육업무관장부서 변경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고용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가구의 영유아
4.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중 “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사회복지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의 연가일수를 준용한다.
4. 특별휴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의 휴가일수를 준용

한다.

제14조 본문중 “사회복지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

제16조제2호의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견책기간 중에 견책사유 발생자

제17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p>
<p>제4조(입소순위)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저소득층의 자녀 3.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4.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p>제4조(입소순위) 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가구의 영유아 4.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
<p>②전항의 3호 4호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하구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사회복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근로자녀를 입소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근 사업체 근로자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p>	<p><삭 제></p>
<p>제5조(보육료 등)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5조(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p> <p>1. 견책사유 1) ~ 4) 생략</p> <p>2. 해임사유 1) ~ 6) 생략</p> <p><u><신 설></u></p>	<p>제16조(징계) ----- ----- -----.</p> <p>1. 견책사유 1) ~ 4) 현행과 같음</p> <p>2. 해임사유 1) ~ 6) 현행과 같음</p> <p><u>7) 견책기간 중에 견책사유 발생자</u></p>
<p>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의 <u>보건복지부</u>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한다.</p>	<p>제17조(시행규칙) ----- ----- ----- <u>여성가족부</u> ----- -----.</p>